

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「주민대표회의」 구성 공고

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[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21호(2026. 3. 12.)]됨에 따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7조에 의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합니다. 주민대표회의 구성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,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26년 3월 19일

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- 가. 주요역할 :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사업전반에 대해 의견 제시
나. 구성인원 :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
다. 구성방법 :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여 서류 제출
라. 제출서류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」 제9조에 따른 서류
-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(붙임1)
 -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(붙임2)
 -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
 - 주민대표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
 - 주민대표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
 - 토지등소유자의 명부
- 마. 제출처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관련문의 : 양천구청 도시계획과(02-2620-3511)